

투자위험등급 :
2 등급
[높은 위험]

산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작 성 기 준 일: 2009.06.0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09.07.0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3 p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4 p
2. 모집예정기간	4 p
3. 모집예정금액	4 p
4. 계약기간	4 p
5. 분류	4 p
6. 집합투자업자	4 p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4 p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4 p
3. 수익구조	6 p
4. 주요 투자위험	7 p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7 p
6. 운용전문인력	7 p
7. 투자실적 추이	8 p
I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9 p
2. 과세	11 p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절차	12 p
IV. 요약 재무정보	13 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

명 칭	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73603)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4820	73604	79379	90622	90623	79511	75934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펀드계약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회 사 명	산은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5층 (☎02-3774-80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산은 삼바 브라질 모투자신탁[채권] (73602)
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73603)	신탁재산의 100%이하 투자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100%이하로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합니다. 단, USD(\$) 대비 이종 통화(브라질 헤알화) 환포지션에 대해서는 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증권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해외 유가증권(채권) 투자전략

■ 운용 개요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 등에 투자
-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US 달러 환산 포지션의 90% 수준에 대해 원/달러 헷지 수행

■ 주요 편입대상 자산

- 브라질 연방, 지방정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금융기관(브라질 내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포함)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채권
- ※ 상기 종목은 브라질 현지 또는 해외거래 채권으로서 신용등급 A(브라질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 이상 또는 BB-(S&P, Moody's, Fitch 등 국제금융기관이 평가한 국제신용등급) 이상인 증권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신용등급 A이상인 단기 채권
- 국내 콜론, 정기에금, 보통예금 등 유동성

■ 채권 포트폴리오 Guidelines

- 개별 채권의 만기: 10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5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신용등급: AA(브라질 현지 평가기관 등급), BB(상기국제평가기관 등급)
- 채권포트폴리오의 개별종목 한도: 종목당 10% 이내
- ※ 상기 운용사항은 시장환경 및 운용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문회사 - Itau 운용 프로세스

■ 비교지수: JPMorgan Global Bond Index – Emerging Market Broad Brazil USD Unhedged Index × 90% + Call × 10%

주1) JPMorgan Global Bond Index – Emerging Market Broad Brazil USD Unhedged Index 는 JP Morgan 사

가 브라질 국공채 중 브라질 국내에서 발행한 고정이율 채권과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 채권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2009년12월 31일부터 생성하였으며, 지수의 성과는 채권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브라질 통화에 대한 환 해지를 가정하지 않아 미달러화 대비 브라질 통화의 가격 변동도 반영되는 미 달러화(USD) 기준 브라질 채권지수입니다.

주2)변경사유:기준BM지수의 지수 생성 중단(2009년 5월 8일까지 생성 및 제공)



모투자신탁의 환위험 관리전략

모 투자신탁은 환해지를 실시합니다. 환해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해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평가액의 90% 수준 [USD(\$) 환산평가액 기준] 환해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환율변동위험 헷지

- 목표 환헷지비율: 신탁재산의 90% 수준 **[USD(\$) 환산평가액 기준]**
- 원칙적으로 모펀드 해외투자 포지션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 단, USD 대비 이종 통화(브라질 헤알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환해지는 원화 대비 U\$의 가치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U\$의 가치가 원화대비 급상승(원화환율이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환차손을 충당하기 위해 불리한 시장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해외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등 자산운용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결과적으로 예상밖의 수익률 하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환당국의 개입 기타 요인으로 인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간 큰 폭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일시적으로 동 괴리폭만큼 기준가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기 환헤지 비율은 작성일 당시의 목표 환헤지 수준으로서 실제 운용상 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의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등의 자본소득(손실) 및 이자소득(손실)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이익(손실)이 결정되는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의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및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고 있으므로 5 등급의 위험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2009.06.09 일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09.04.30 기준)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유재홍	1970	팀장	24개	4,739억	- 09.06~현재 산은자산 해외투자팀장 - 08.05~09.05 얼라이언스번스타인 포트폴리오 매니저팀 - 97.12~02.05 동원 BNP 투신운용 채권운용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산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상기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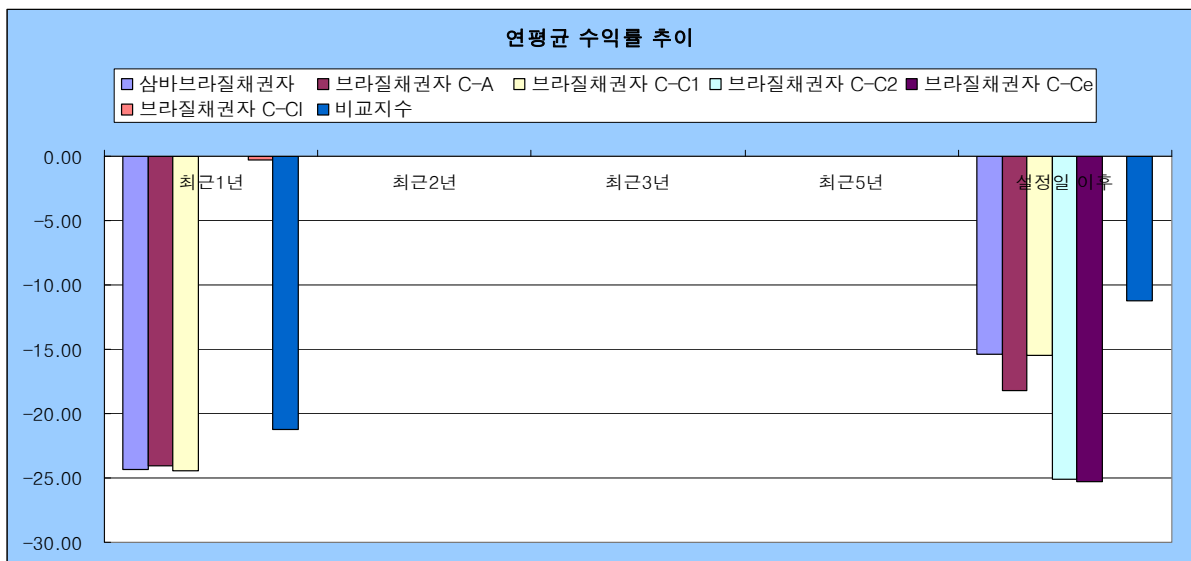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수익률

연도	최근1년 2008.01.16 ~ 2009.01.15	최근2년 (YY.MM.DD~YY.MM.DD)	최근3년 (YY.MM.DD~YY.MM.DD)	최근5년 (YY.MM.DD~YY.MM.DD)	설정일 이후 2007.09.12 ~ 2009.01.15
삼바브라질채권자	-24.36				-15.41
브라질채권자 C-A	-24.04				-18.17
브라질채권자 C-C1	-24.43				-15.50
브라질채권자 C-C2					-25.05
브라질채권자 C-Ce					-25.29
브라질채권자 C-CI	-0.30				0.00
비교지수	-21.19				-11.26

주1) 비교지수 : JPMorgan Global Bond Index – Emerging Market Broad Brazil USD Unhedged Index × 90% + Call × 1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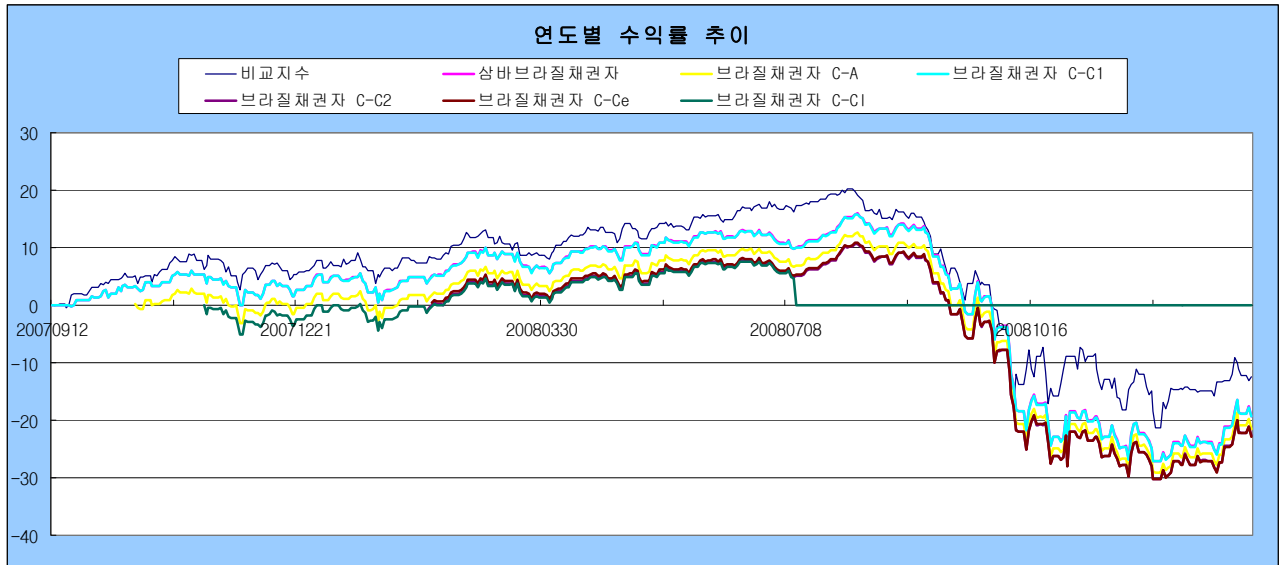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08.01.16 ~ 2009.01.15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삼바브라질채권자	-24.29				
브라질채권자 C-A	-23.97				
브라질채권자 C-C1	-24.37				
브라질채권자 C-C2	-25.22				
브라질채권자 C-Ce	-25.48				
브라질채권자 C-CI	-0.30				
비교지수	-21.14				

주1) 비교지수 : JPMorgan Global Bond Index - Emerging Market Broad Brazil USD Unhedged Index × 90% + Call × 1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음
종류 C2	Wrap 계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종류 C3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인 경우
종류 C4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인 법인
종류 Ce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I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3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i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	-	-	-	-	-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i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							매 3 개월 후급
투자매매업자·투자중 개업자 보수	연 0.20%	연0.70%	-	연 0.30%	연 0.15%	연0.60%	연0.03%	
신탁업자 보수	연 0.055%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125%							
기타 비용	연 0.0731%	연 0.076%	연 0.0687%	주 4) 참조		연 0.0744%	주 4) 참조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0.9825%	연 1.4825%	연 0.7825%			연 1.3825%		
합성총보수비용	연 1.0556%	연 1.5585%	연 0.8512%			연 1.4569%		
증권 거래비용	연 0.1498%	연 0.146%	연 0.1531%			연 0.1486%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8.12.31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8.12.3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준일 현재 미설정 종류로 해당비용들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0	366	605	1,31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8	390	346	1,407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	480	842	1,91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0	505	885	2,014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254	444	1,0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7	276	483	1,100
종류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주2) 참조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종류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2	448	785	1,7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0	472	827	1,883
종류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5	173	303	68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9	185	324	738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기준일 현재 미설정 종류로 해당비용들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이 평가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kdbasset.co.kr)·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음
종류 C2	Wrap 계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종류 C3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인 경우
종류 C4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인 법인
종류 Ce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3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화인경영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 1 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요약재무정보	제 1 기		
	20080911		
I. 운용자산	16,923,662,761		
증권	15,892,371,002		
현금 및 예치금	31,291,759		
기타운용자산	1,000,000,000		
II. 기타자산	41,452,035		
자산총계	16,965,114,796		
II. 기타부채	111,985,960		
부채총계	111,985,960		
I. 원본	16,047,911,941		
II. 수익조정금	106,414,590		
III. 이익잉여금	698,802,305		
자본총계	16,853,128,836		
I. 운용수익	947,840,406		
이자수익	14,752,586		
매매/평가차익(손)	925,371,002		
기타이익	7,716,818		
II. 운용비용	249,038,101		
관련회사보수	246,017,135		
기타비용	3,020,966		
III. 당기 순이익	698,802,305		
* 매매회전율	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